

93시유임야관리(환수)계획

의안 번호	168
----------	-----

제출년월일: 93. 5. .

제출자 : 속 초 시 장

1. 주 문

■ 93년도 시유임야 관리(환수)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함

2. 제 안 사 유

■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시유임야의 관리(환수)계획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3. 주 요 내 용

■ 취득 (환수) ————— 1필

○ 대상필지 : 속초시 대포동 산60-1번지

○ 면적 : 4,142㎡(1,253평) — 圖上 면적으로 환수시 실측면적을 환수

■ 이 유

속초 어업 무선국 송신소 이설 부지인 속초시 대포동 산 60- 1번지 시유임야 매각임지에 속초 어민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 무선국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고 묘지 연고자(대포동 1통)들이 이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집단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집단묘지부분 4,142㎡을 환수 코져함

市有 林野 賣却 林地 還收 計劃

現 況

■ 매각 내역

-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산 60-1 번지 (시유지)
 - 지 적 _____ 9,322m² (2,820평)
 - 소유권 보존등기 _____ 76. 7. 8 (속초시)
 - 현 공시지가 _____ m²당 14,000원
- 매각 _____ 일 자 _____ 92. 11. 15
 - 매각대 _____ 186,440천원 (m²당 20,000원)
 - 매각처 _____ 수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
- 매각 목적 _____ 속초 어업 무선국 송신소 이설 부지용

■ 환수 계획

- 前記 매각 임지 9,322m² 중 墓地 집단 부분의 면적만을 市에서 다시 還收
환수 면적 : 4,142m² (1,253평)
- ※ 본면적은 圖上으로 판독한 것으로서 追後 實測에 의한 面積을 환수 하여야함
- 환수 내역 — 당초 매각 대금 (m²당 20,000원)에 의거 환수
 - 환수 금액 _____ 82,840천원
 - 환수 사유
 - 속초어민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 無線局설치가 시급한
실정 이고
 - 墓地 緣故者 (대포동 1통)들이 移葬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集團 민원 해결 차원에서 還收 計劃

■ 還收 경 위

- 92. 11. 15일 본 시유임야를 수협 중앙회에 매각 하였던바

- 林地內 散在되어 있는 墓地 40基가 있어 水協에서는 이를 移葬 공고 하였음

공고일	93. 2. 27
移葬期間	93. 2. 22 — 93. 4. 21
공고기관	수협 중앙회
移葬場所	속초시 노학동 산158번지 (공동 묘지)

- 移葬 통보를 받은 大浦洞 1통 내몰치리 주민들은

本 임야는 적산림으로서 60년 이상된 묘지가 있고 내몰치리 공동 묘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적복구 (70. 3. 4) 및 속초시로 소유권 보존등기 (76. 7. 8)된 年度 以前에 공동墓지로 사용하여 왔기에 緣故權을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선조묘를 移葬하라는 당치도 없으니 原狀대로 市有地로 복구가 되도록 하여 달라고 진정 하였음

- 市에서 해결 하는 方案으로

—— 묘지 연고권자 대포동 1통 지역 주민과의 대화

· 첫째 — 市에서 移葬 對象地를 알선하여 주고 水協測에서 移葬費를 지급 하여 주는 方案과

· 둘째 — 墓地部分 만큼의 面積 (약 5평내외) 또는 현재 묘지가 집단적으로 있는 면적 (약 1.253평)을 墓地 연고자들이 매수하는 方案을 4회에 걸쳐 대화하여 본결과 대다수가 移葬 自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음

—— 매수자인 水協과 협의 결과 水協測에서는 市에서 묘지 부분 만큼을 다시 환수하여 주면 환수대금과 豫算을 자체로 더 확보하여 기존 시유지와 연접된 임야인 대포동 산59-1번지의 1필(면적: 6,447㎡)을 추가 매수하여 어업무선국을 설치할수 있도록 바라고 있음

조치 계획

- 墓地 集團部分을 市에서 還收(買受)하는 方案

어업무선국도 속초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국가 공공사업으로 불가 피한 실정이고

爲民행정 차원에서 墓地 연고권자들이 주장하는 市有地 原狀 복구건도 주민보호를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기 매각된 임지를 묘지 集團 部分의 面積(약 4,141㎡ — 1,253평)을 시에서 다시 환수하게 되면

☐ 市測에서는 財産上의 손해는 없을 뿐더러
☐ 集團 民원도 해소될것으로 판단됨

- 市에서 墓池部分만을 還收할 경우의 現況

지 적	환 수 면 적	㎡당 공 시 지 가	92년도 ㎡당 실거래액	매 수 (환 수) 금 액
9,322㎡	4,142㎡ (1,253평)	14,000원	20,000원 (평당 66,106원)	82,840천원

■ 其 他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경쟁에 부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다시 買受코저함.